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28호

2020. 10. 13.

건명	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환경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10. 13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10. 13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도내 인접 시·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운영 결과 「시·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」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

주요내용

-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 설정(안 제2조제9호 , 별표 1)

검토의견

- 「시·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」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